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7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7. 체결된 증여계약은 30,11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7. 체결된 증여계약은 49,91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9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① 2010. 12. 28. 신용보증금액 2,7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12. 28. ~ 2011. 12. 28.으로 정한(이후 보증기간이 2019. 12. 28.까지 연장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5. 1. 5. 신용보증금액 1,26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5. 1. 5. ~ 2016. 1. 5.으로 정한(이후 보증기간이 2020. 1. 5.까지 연장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③ 2015. 6. 2. 신용보증금액 1,020만 원, 보증기간 2015. 6. 2. ~ 2018. 5. 31.으로 정한(이후 보증기간이 2019. 5. 31.까지 연장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2010. 12. 28. 원고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28.으로, 만기에 이자를 변제하기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② 2015. 1. 5. 원고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1,400만 원을 변제기 2016. 1. 5.으로,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③ 2015. 6. 1. 원고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1,200만 원을 변제기 2018. 5. 31.으로,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정한 대출(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D은 2016. 4. 7. 아버지인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F 답 3197㎡[이후 2018. 1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9. 6. 9.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58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8. 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H, I은 2018.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D은 2019.경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E은 그 무렵 원고에게 D에 관한 위 각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3. 29. E에 ① 이 사건 제1 대출의 원리금 합계 27,350,275원을, ②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리금 합계 12,220,798원을, ③ 이 사건 제3 대출의 원리금 합계 9,842,74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을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D은 원고에게 56,003,385원 및 그중 49,337,631원(= 27,350,275원 + 12,220,798원 + 9,842,742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8.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D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원금만 5,600만 원, D의 G조합의 대출금채무는 원금만 5,94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각 부동산(2020. 11. 23. 당시 가액 89,516,000원이었고,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58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외에는 D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D의 G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날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8. 8. 31.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8. 8. 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저당권자는 G조합으로 원고와 별개의 K조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8. 8. 31.경 D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5. 12. 28. 이 사건 제1 대출 및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위 각 계약은 2016. 12. 28.으로 기한이 연장된 사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 대출 및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위 각 계약은 2017. 1. 5.으로

기한이 연장된 사실, D은 2016. 1. 4. 이 사건 제2 대출에 대한 이자의 납입을 지연하였고, 2016. 6. 30. 이 사건 제1 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을 지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주채무자인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대출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3년이 지난 2019. 3. 29. 실제로 구상권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D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8. 8.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피고가 2018. 9.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I, H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

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채권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원금만 56,003,385원이 존재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5,94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당시(2018. 8. 31.) 3,960만 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20. 11. 23. 당시 89,516,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역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89,516,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증여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 5,940만 원을 공제한 30,116,000원(= 89,516,000원 - 5,940만 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원금만 56,003,385원이 넘는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30,116,000원 중 적은 금액인 30,116,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0,11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1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별지

목록

1. 경북 영덕군 F 잡종지 800㎡
2. 경북 영덕군 L 답 1897㎡
3. 경북 영덕군 M 잡종지 500㎡